

# 산업안전

##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양벌규정 적용

하나의 건설공사를 4개회사가 각각 25%씩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순수공동이 행방식으로 시공할 때 관리직사원 및 건축기사 등은 각 회사에서 같은 수로 차출하였으며, 일용직 등 일반근로자는 현장에서 공동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참여회사가 2~6개로 다양함) 안전관리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공동으로 사용하며 이윤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으로 배분함. 이 같은 건설공사 공동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

-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를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 《갑설》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이므로 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을설》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이므로 당연히 대표회사만 양벌규정 을 적용한다.

대표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를 선임하였을 때 법인의 처벌 여부는

-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개 법인 모두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 사유 : 현장소장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현장소장만을 처벌한다는 병설 근거는 양벌규정 중 행위자 및 법인 모두를 처벌한다는 내용중에서 행위자를 벌 한다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 현장소장이 대표회사 소속 종업원으로 그 대표회사만 양벌규정 적용대상 으로 한다는 을설 근거는 대표회사가 4개 공동시공 회사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현장을 선임했다는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 됨.
  - 대표 (민법 제59조)의 법리상 대표권에 근거하여 행한 법률행위는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손해되거나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현장소장이 4개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인 이상 4개 법인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하도급 근로자만 작업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여부

- (1) 한 회사내 3개의 단위공장 중 1개 공장내의 일부 작업지역에 도급을 주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동일한 장소』에 해당되는 지역은
- (2) 원도급업체의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만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3) 정원이 300명인 회사내의 단위공장 (정원 40명, 하수급 작업인원 5명)의 일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주어 하도급 근로자만이 그 작업을 수행할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범위내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장소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장내의 범위인지 여부로 동일한 장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한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상당한 분리관계가 없고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의 …”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은 작업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또한 동 규정에 “…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시 근로자란 “… 수급인 및 하도급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동 규정에 “…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이라고 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조건에 하수급근로자의 작업수행 조건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도급이 행해지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동법 제2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험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도급인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한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임.
- 따라서 동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의무만을 지게 되는 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짊은 물론,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되는 것임.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법 제2조 제3호)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의 제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이를 보완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중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의 적용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와 수를 산정할 때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



## 크레인류 방호장치 설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3조에 의거  
크레인류 방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관련규정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한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 크레인 종류별 및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한 방호장치의 설치 적용  
범위 및 설치해야 할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7)의 규  
정에 의하여 위험기계·기구인 크레인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용량제한 없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  
여·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 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  
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됨.

크레인의 종류는 구조, 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수십 가지로 분류되고, 방호장  
치 또한 크레인의 구조,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종류가 다  
르게 되며 그 대표적인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음.

- |            |              |
|------------|--------------|
| ① 과부하방지장치  | ② 권과방지장치     |
| ③ 충돌방지장치   | ④ 주행크레인 경보장치 |
| ⑤ 후크해지장치   | ⑥ 경사각 지시장치   |
| ⑦ 모우먼트 리미트 | ⑧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 ⑨ 레인 정지기구  | ⑩ 주행 리미트스위치  |
| ⑪ 비상정지스위치  | ⑫ 정전보상장치     |
| ⑬ 회전부 방호덮개 | ⑭ 안전밸브       |

다만, 크레인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상기의 방호장치 중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 지브의 경사각 및 길이가 변하지 않는 구조의 지브크레인의 경우 상기의  
⑦번 (모우먼트 리미터)이 구비될 경우 ①번 (과부하방지장치)은 설치할  
필요가 없음)

